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4일,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
·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

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제2항 후단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마약류 범죄는 그 전파 속도가 빠르고 범죄의 수법이 다양하며 신종 마약류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무분별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변경에 관하여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가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변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마약류 관련 대책을 재정비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원)

대안반영폐기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